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2915호
- 나. 제 안 자 : 임종국 의원 외 17명
- 다. 제 안 일 : 2025. 8. 8.
- 라. 회 부 일 : 2025. 8. 14.

2. 제안이유

-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수혜 및 교류 대상을 외국의 지방정부 외에 관련 국제기구, 공공기관까지 포괄하여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의규정의 “외국 지방정부”를 “외국 지방정부 등”으로 수정하고, 그 범위를 외국의 지방정부와 그 산하 또는 관련 공공기관,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교류 관련 국제기구로 확대함 (안 제2조)
- 나.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용도를 “외국 지방정부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확대함 (안 제6조제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5. 8. 20. ~ 8. 24.) 결과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글로벌도시정책관) : 원안 가결

5. 검토 의견

가. 조례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지원대상을 기존 ‘외국 지방정부’에서 ‘외국 지방정부 등’으로 변경하여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까지 포함함으로써 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u>외국 지방정부</u> ’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u>외국의 지방정부</u> 를 말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2조(정의) ————— “ <u>외국 지방정부 등</u> ”이란 ————— ————— 다음 각 호의 기관을 ———. 1. <u>외국의 지방정부</u> 2. <u>외국의 지방정부 산하 또는 관련 공공기관</u> 3. <u>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교류 관련 국제기구</u>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외국 지방정부와</u> 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3. (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u>외국 지방정부 등과</u> ————— 2. 3. (현행과 같음)

나. 국제개발협력 기금 연혁 및 현황

- 국제개발협력기금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관계 증진 및 외국 지방정부 재해 구호경비를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기존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대외협력기금’의 ‘국제협력계정’으로 운용되었음

-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의 두 계정으로 운영되었으나, 기금 심의 등의 비효율성과 근거 조례 분리 필요성에 의하여 ’24.6월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¹⁾과 조례 신설²⁾을 통해 ‘지역교류협력기금(舊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과 ‘국제개발협력기금(舊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으로 분리되었음
- 현재 국제개발협력기금은 79억 11백만 원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형 ODA’챌린지, ‘외국지방정부 재해 구호’,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 등을 추진중임

< 국제개발협력 기금 지출내역 (25년 7월 기준) >

	지출내역	예산액 (A)	'25년 지출 누계 (C)	예산대비(%) (C/A)
연번	합 계	7,911	1,795	22.7%
1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	947	394	41.6%
2	외국도시공무원 초청연수	427	169	39.7%
3	해외도시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69	-	0.0%
4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서울도시정책 최고위과정	311	178	57.1%
5	서울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905	674	74.4%
6	서울인재유치 네트워킹 프로그램	160	79	49.3%
7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153	113	73.9%
8	서울형 ODA 챌린지 추진	940	11	1.1%
9	민간국제개발협력 지원사업	571	177	30.9%
10	해외도시물품나눔	50	-	-
11	스마트시티 국제개발협력	250	-	-
12	ODA 활성화·사무개편 실태조사	93	-	-
13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400	-	-
14	여유자금예치	2,632	-	-
15	기금관리비	5	1	22.0%

- 1) 의안번호 1901,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 의안번호 1906,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제출)

다. 검토 내용

(1)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기구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모두 포괄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공공외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국제개발협력의 시행기관으로 규정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개발협력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협력을 수행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

「공공외교법」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민간부분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 정부·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2.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과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
3. 외국과의 공공외교 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행정 지원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 따라서 관련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의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2) 조례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

- 국제개발협력은 양자간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차원의 국제협력에서는 UN-Habitat,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전문 국제기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협력 대상을 ‘외국 지방정부’로 한정하여 다변화된 국제협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제협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기금 운용에 있어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서울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3) 추가 논의 필요점 및 기타 검토사항

- 이번 조례개정으로 협력대상과 기관 범위가 ‘외국 지방정부’에서 ‘국제 기구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협력 기관의 선정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특히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기금 목적과 실질적 연관성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명확한 선정 기준과 투명한 심사 절차 구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금 용도가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³⁾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명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실제로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24년, 2억 50백만원)’, ‘서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25년, 8억 65백만원)’ 등의 사업이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를 위한 사전 검토·견제, 책임성 확보 방안 마련에도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조례명은 ‘국제개발협력기금’으로 명명되어 있으나, 실제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살펴보면 국제교류·협력 성격의 사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는 공적개발원조(ODA)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기금 운용 내용과 조례상 용어 간에 개념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조례 명칭과 실제 운용 내용 간의 괴리는 기금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므로, 향후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전반의 용어와 조례 구성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3)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지원대상을 ‘외국 지방정부’에서 ‘외국 지방정부 등’으로 확대하여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까지 포함함으로써 다변화된 국제협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기금의 실제 운용 현황과 조례상 명칭 및 목적 간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조례 정비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